

特許權 侵害와 特許發明의 保護

主要 判例를 중심으로 살펴 본 特許의 保護

(1) 明細書의 記載

(前號에서 계속)

한편, 어떤 요건이 特許請求範圍에는 一般的인 用語로 使用되고 있으나 發明의 詳細한 說明에서는 特定の 作用效果를 보유하고 이 特定작용효과를 갖는 것이 發明의 構成上 필요한 것으로 說明되고 있는 경우 그 用語로 表示되고 있는 것은 그 特定작용효과를 갖는 것에 한정된다. 特許請求範圍에 使用되고 있는 用語의 技術的 意味가 상세한 說明을 참작하여도 分明하지 않은 경우 侵害物이나 方法이 이 用語가 表示하는 要件을 具備하고 있다고 判斷될 수는 없는 것으로 된다.

特許請求範圍에 기재되고 있는 內容이 發明의 상세한 說明에 개시되고 있는 發明의 一部에 지나지 않는 경우 保護範圍는 그 一部에 한정된다. 이 경우 이와같이 特許請求範圍를 한정함에 따른 불이익은 特許權者가 감수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制限이 명세서 作成上의 오기에서 비롯되는 경우에도 誤記의 訂正이 實際상 特許請求範圍를 擴張하는 경우 訂正審判에 의한 訂正도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特許侵害訴訟이나 權利範圍 確認 審判에서도 이 制限을 단지 誤記라고 하여 出願人의 意圖에 따라 訂正되도록 特許請求範圍를 解釋해서는 안된다. 發明의 상세한 說明의 극히 一部에 나머지 대부분의 기재와 矛盾되는 記載가 있어 全體를 統一的으로 理解하기 困難한 경우 그 一部記載는 다른 나머지 기재를 參작하여 전체를 合理的으로 解釋하여야 할 것이다.

(2) 公知技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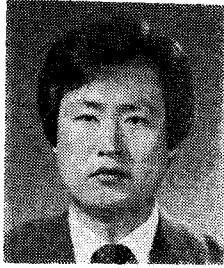
特許請求範圍를 解釋함에 있어서 出願時의 公知技術을 考慮해야 한다는 主張에 대해서는 消極說도 없지는 않으나 오늘날은 널리 이를 인정하고 있다.

明細書는 出願時에 있어서 출원시의 技術水準을 前提로 해서 作成된 것이기 때문에 明細書에 記載된 發

明의 內容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發明이 속하는 技術分野에 있어서의 公知技術을 參작해야 하는 것은 當然하다. 判例도 등록된 實用新案으로서 그 당시 公知 公용등의 사유까지 포함되어 신규성 있는 技術의 考案이 登錄되었다면 그 新規性 있는 技術의 效果가 認定될 수 없는 公知共用등의 部分에 대하여서는 實用新案權으로서 排他的 權利를 認定할 수 없고, 그 實用新案權의 權利範圍는 그 新規性 있는 技術의 考案에 한하여 인정된다(1980. 9. 30. 78후 28판결)고 하여 명시적으로 이를 인정하고 있다(1977. 7. 24. 宣告 70후 18判決, 1964. 10. 22. 宣告 53후 45判決 도 同 취지임). 그러나 한편으로 다른 判決은 “논지가 내세우는 당원 1964. 10. 22. 선고된 63 후 45판결은 公知공용의 사유까지 포함하여 다른 신규성 있는 기술적 고안이 등록된 경우에 있어서 그 公知공용의 部分에 대해서 까지 實用新案權으로서 배타적權利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그 판결의 취지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처럼 등록된 實用新案權의 기술적 고안의 전부(이른바 폼보수 건의 摺擦具나 布袋狀)가 公知공용에 속하는 경우는 위의 대법원 판결이 적용될 경우가 못된다. 이러한 취지에서 원판결이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 있는 등록제 3785호 實用新案의 內容이 公知공용에 속하는 것을 등록하여 준것이라 할지라도 이 등록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까지는 그 등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심결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여 이를 否定하고 있다. (1970. 7. 24. 宣告 70후 19判決, 同 1973. 7. 23宣告 73후 66判決) 이와같이 過去 大法院은 權利範圍確認審判에 있어서 對象權利의 有效性(特許性 또는 登錄性) 自體에 대해서는 다룰 수 없으나 權利의 解釋에 있어서 “公知에 속하는 事項은 權利의 範圍에서 除外해야 한다”, 또는 “權利範圍의 解釋에 있어서 是 公知事項가

範圍(11)

範圍중심



張 舜 鎬
(辯護士·辨理士)

지 포함하도록 해석되어서는 안된다”라고 하는 解釋方法을 취해 왔었다. 그러나 大法院은 1983. 7. 26 宣告 81 후 56 判決에서 “등록된 특허의 일부에 그 발명의 기술적 효과발생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닌 공지사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공지부분에까지 권리범위가 확장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등록된 특허발명의 전부가 출원당시 공지공용이었다던 그러한 경우에도 특허무효의 심결의 유무에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근거가 상실된다는 것은 논리상 당연한 이치라 보지 않을 수 없고 이를 구별하여 원심과 같이 그 일부에 공지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범위가 미치지 아니하고, 전부가 공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근거도 찾아 볼수 없으며”라고 하여 登錄된 特許發明의 全部가 出願當時 公知共用인 경우에도 特許無效의 審決 有無에 關係없이 그 權利範圍를 인정할 수 없음을 明白히 하였다. (198 5. 9. 10. 선고 84다가 1068 實用新案權侵害 假處分 異議 事件에서도 “등록된 실용신안이 공지공용의 것으로서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범위를 침해 하였다고 할 것인바”라고 하여 同一한 취지로 判決하고 있다).

日本の 경우를 보면 “어떠한 發明에 대해 特許權이 주어지는 가를 감안할 때에는 그 當時의 技術水準을 參照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아마도 特許權이 新規의 工業的 發明에 대해 주어지는 以上 그 當時에 公知인 部分은 新規의 發明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여 權利範圍의 解釋에 있어서 公知部分을 除外하여 解釋할 것이라는 취지의 判決이나(소화 37. 12. 7 판결), 當該發明이 全部公知인 경우에는 特許權의 行使가 權利남용이라고 하거나 또는 禁止權의 行使가 許容되지 않는 것으로 하는 등의 判例도 있으나 現在에 이

論壇解說

目 次

- 第1章. 特許權 侵害의 成立
- 第2章. 特許의 同一性 判斷에 관한 各國의 學說 및 判例
- 第3章. 特許의 保護範圍
- 第4章. 特許侵害에 대한 對策
(고딕은 이번號, 명조는 지난 및 다음號)

어서는 侵害訴訟에서 特許權의 無效를 判斷할 수 없다는 것이 確立된 判例이며, 全部 公知인 경우에 한해 當該發明의 技術의 範圍를 특허청구범위의 字義대로 解釋하고, 또는 發明의 詳細한 說明欄 實施例등에 表示되어 있는 實施例와 같이 限定解釋하는 것이 許容된다고 하는 것이 종래 大多數 判例의 見解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 問題와 관련하여 日本에서는 大阪高裁의 判決이 「각각의 構成要件 組合 自體에 技術的 思想의 創作性이 없는 것을 이유로 權利範圍를 限定解釋한 다음 (가)號가 技術的 範圍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것을 契機로 “發明이 公知技術의 單純한 集合에 지나지 않는 것이 極히 明白한 경우에도 全部 公知인 發明에 準하여 特許請求範圍의 文言을 文字대로 嚴格히 解釋하여 技術範圍를 定하는 것이 許容되는가”라고 하는 問題에 대한 論議가 활발하다. 이 問題에 關하여는 日本의 判例와 學說이 各各 肯定說과 否定說의 對立을 보이고 있다. 먼저 判例를 보면 “登錄前에 그 案考이 속하는 技術의 分野에서 通常의 知識을 가진자가 右各公知例에 계기한 案考에 基하여 容易하게 案考할 수 있는 것으로 認定되고, 결국 進歩性을 缺하고 있다. 右와 같이 본진 構成要件은 모두 公知이며, 新規性이 없고, 또한 進歩性도 認定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本件 實用新案의 技術의 範圍는 本件 實用新案公報의 實用新案登錄請求範圍에 記載되고 있는 字義 대로의 內容을 基準으로 하여 이것을 가장 좁게 限定的으로 解釋하는 것이 相當하다”고 하여 被告製品이 限定解釋한 技術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理由로 原告의 請求를 棄却하고 있으며(松山地判 昭和 49. 2. 25 判決), 또다른 判決에서도 “本件 案考은 公知技術의 單純한 集合에 지나지 않는 것이 極히 明白하다.

그렇다면 本件 訴訟에서는 本件 實用新案權이 일음

有效하게 存在한 것으로 취급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여도 본건 고안의 技術의 範圍의 確定에 있어서는 本件 考案의 構成要件 모두를 동시에 具備한 것이 實用新案登錄出願前에 公知의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그 實用新案登錄이 實用新案法 第3條 第1項 第3號(韓國實用新案法 第5條1項2號 參照)의 規定에 違反하여 된 것으로서 同法 제37條 第1項 第1號(韓國實用新案법 第19條1項1號 參照)所定의 無效原因을 갖는 境遇에 準하여(省略)本件登錄請求範圍의 記載 내지 本件考案의 構成要件의 文言을 文字대로 嚴格히 解釋하고, 이와 같이 限定된 것으로서 本件考案의 技術의 範圍를 定하지 않으면 안된다”(東京地判 昭和 56.5.18)고하고 있다. 이와 같이 公知技術을 集合한 것이 극히 明白한 경우에는 적어도 全部公知인 경우에 準하여 限定解釋할 것으로 하거나 公知技術의 集合이 推考容易한 發明에 대해서도 그 技術의 範圍를 限定 解釋해야 할 취지로 判示하고 있는 肯定判決이 있는 반면에 一部 判決(大阪地判昭和 58.5.27判決, 大阪地判昭和 59.10.30 判決)은 이를 否定하고 있다.

한편 學說을 보던 肯定說을 주장하는 松本重敏氏는 自由技術除外原則의 立場에 서서, 特許發明 出願時의 公知技術 및 公知技術로 부터 當業者가 容易하게 推考할 수 있는 技術에 대해서까지 特許發明의 保護範圍를 미치게해서는 안된다고 하고(松本重敏 著 特許特許의 保護範圍 p.290) 또는 出願前의 公知技術 참작의 限度 즉, 日本 特許法 第29條 第1項(韓國 特許法 第6條1項 參照)의 新規性의 缺如뿐만 아니라 同條 2項의 進歩性의 缺如의 경우에도 참작되어야 하는가의 問題에 대해서는 “이 問題는 簡單한 構造의 考案的 發明, 複雜한 化學特許等의 技術分野 및 爭點인 技術의 裁判所에서의 理解 困難等を 考慮하여 케이스 마다 判斷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고 하여(註解特許法 下卷 p.544)事案에 따라서 侵害裁判所가 推考容易의 判斷을 할 수 있는 立場을 採擇하고 있으며, 吉藤幸朗氏는 構成要件의 全部公知는 當該 發明의 構成要件의 全部를 포함하는 1개의 公知技術이 存在하는 경우 및 右 各 構成要件을 모은 것이 當業者이면 當然할 程度로 進歩性이 없는 것이 극히 명료한 경우라고하여(同 特許法概說 6訂 p.352) 단순히 公知技術을 모은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도 限定解釋이 許容되는 見解를 취하고 있다.

한편 否定說을 主張하는 馬瀨文夫氏는 當該發明이 그 出願當時 當業者에게 推考容易인가 아닌가의 判斷은 自然科學의 分野에서 技術 專門家가 아닌 통상 法

院의 法官의 能力을 넘는 사항이기 때문에 進歩性의 判斷은 特許廳에 맡겨져야 할 것으로 하여 多數判例를 支持한다(同 特許發明의 技術의 範圍 昭和 56 p.91). 中山信弘氏는 公知技術의 抗辯 ((가)號가 公知技術에 속하는 경우에는 (가)號를 構成하는 當該發明의 構成要件과 對比하지 않더라도 特許權에 기한 權利行使가 許容되지 않는다는 抗辯)이 認定되는 範圍에 대해서 “公知技術에 近似한 技術의 전부에 대하여 審理한다고 하는 것은 特許廳에서 審理를 再審査함과 같이 되어 裁判에 長時間을 요하고 신속한 解決을 目的으로 한 公知技術의 抗辯의 취지 그 自體를 泯각시키는 결과로 될 것이다. 또한 技術의 專門知識을 缺한 裁判官에게 進歩性의 判斷까지 求하는 것은 負擔이 過重하다”고 한 다음 “侵害者가 實施하고 있는 技術이 公知技術과 同一한가 또는 公知技術과 유사한 것인가가 分明한 경우에 한하여 公知技術의 抗辯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여 侵害法院에서 進歩性의 판단을 시키는 것에 消極的이며, 村林隆一氏 역시 진보성과 기술적범위에 관하여 우선 發明者가 特許權者로서 保護되는 것은 當該技術分野에 있어서 技術의 進歩에 寄與했기 때문이고 따라서 그 保護範圍는 그의 기여의 범위에 限定되어야 할 것이라고 한 다음 “進歩性 없는 發明은 특히로 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여도 新規性이 없는 발명과 달리 그 範圍는 적어도 社會에 기여하고 있는 것일 것이므로 無效로 되기까지는 그 限定된 範圍에서 寄與力을 갖는 것으로 하여 그 範圍에서 보호를 주는 것은 現行特許制度에서 보아 지나치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아닐까”(同 先願, 新規性, 進歩성과 (技術의 範圍 特許管理 34卷 4號 p.453)라는 이유로 進歩性의 缺如의 境遇에는 限定解釋 할 수는 없다고 說明하고 있다.

우리 特許法의 解釋上 발명이 公知기술의 단순한 集合에 지나지 않는 경우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에 대하여 判例는 分明하지 않으나 우선 權利範圍確認審判에 있어서는 (權利 範圍確認審判의 1審과 2審이 特許賦與의 境遇와 同一하게 特許廳의 管轄에 屬하므로) 公知共用의 一般의인 境遇와 동일하게 특히무효의 심결 유무에 관계없이 登錄權利의 權利範圍는 認定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侵害訴訟의 경우에도 위 1985.9.10선고 84다카 1068判決에 비추어 審理法院 스스로가 登錄發明이 公知共用으로서 無效이고, 따라서 침해가 아니라고 判斷할 수 있다고 解釋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公知技術을 考慮하면 그 特許發明이 全體로

서 公知技術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判斷되는 경우 技術한 바와 같이 特許權의 行使가 認定되어서는 안된다. 이 境遇 日本에서는 特許가 無效로 되기까지는 일단 有效하다는 前提下에 그 技術의 範圍를 明細書에 記載된 實施例에 엄격하게 일치하는 부문에 한정하는 것으로 하여 侵害態樣에 特許權의 效力이 미치지 않는다는 結論을 도출하는 判決方法이 유력하게 행하여지고 있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의 경우는 登錄된 特許發明의 전부가 出願當時 公知共用이었다면 特許無效의 審決有無에 관계없이 그 權利範圍를 認定할 근거를 喪失하고 따라서 權利範圍에 속하지 않는다는 判例가 확립되어 있다.

(3) 發明者, 出願人의 認識限度

前述한 바와 같이 特許請求範圍의 解釋은 特許請求範圍의 記載가 表示하고 있는 客觀的 의미를 明確히 하는 것이고, 出願人의 內心的 意思를 探究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發明者나 出願人이 發明의 技術의 範圍에 속하지 않는다고 認識하고 있는 事項은 特許權에 의한 發明의 保護는 본래 發明者가 創作 認識한 範圍內에서 출원인이 特許賦與를 청구한 한도를 넘어서 주어져서는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保護範圍에 포함하여 解釋되어서는 안된다. 出願過程에서 表示된 出願人의 意圖(一般的으로 特許賦與記錄은 公開되지 않으므로 一般人은 特許明細書에 記載된 事項만으로 特許發明의 內容을 파악할 수 있을 뿐이나 異義申請이 있었던 경우 등은 明細書 이외에 出願人의 意圖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등의 事實이 特許請求範圍의 해석에 있어서 考慮된다.

4. 特許發明의 具體的 保護範圍

가. 具體的 保護範圍의 確定 方法

侵害態樣이 保護範圍에 속하는가 어떤가의 判斷은 위와 같이 하여 確定된 具體的 保護範圍의 內容과 當해 침해태양과의 比較를 통해 행해진다. 이 判斷의 結果에 의해 當該 發明이 갖는 保護範圍가 具體的으로 確定된다. 侵害態樣이 特許發明의 保護範圍에 속하느냐 또는 속하지 않느냐의 判斷은 抽象的 保護範圍를 大前提로 하고, 侵害態樣을 小前提로 하여 兩者를 對比 後者가 前者에 包含되는가의 判斷으로서 행하여 지기 때문에 侵害態樣과의 對比에 앞서 추상적 보호 범위는 확정되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抽象的 概念의 外延을 그 자체로서 確定하는 것은 不可能하고, 언제나

具體的 對象이 그것에 包含되는가의 判斷을 통하여 對象마다 확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具體的 保護範圍의 確定도 이와 같이 具體的 保護範圍 基礎를 형성하는 特許請求範圍의 內容과 具體的인 侵害態樣과의 對比 判斷의 結果로서 確定되게 된다.

나. 構成要件 該當性

特許請求範圍의 內容과 具體的인 侵害態樣과의 對比 判斷하기 위해서 各國의 實務은 特許請求範圍의 記載를 構成要件마다 分說하고, 侵害態樣의 特徵을 이에 對應시켜 兩者를 比較 후자의 特徵이 前者의 構成要件에 該當하는 理由를 說明하는 方法이 행하여지고 있다. 이 방법은 爭點의 存在를 분명히 하고, 爭點에 論議를 集中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優秀하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구성요건으로 분해하기 때문에 當該發明이 갖는 技術의 思想의 一體性이 充分히 考慮되지 않을 憂慮가 있다. 그러나 이 問題는 構成要件 分說方法에 의하되 各 構成要件이 當該發明 中에서 차지하는 技術的意義 등을 說明함에 의해 解消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特許實務에 있어서는 (특히 實用新案의 경우) 構成要件을 分說하여 대비하는 방법보다는 오히려 全體적으로 比較한 後 同一한 部分을 제외한 나머지 部分의 差異가 設計變更에 지나지 않는다고나, 均等範圍에 속한다는 主張立證이 행하여 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構成要件의 分說에 의한 침해태양의 대비가 무의미한 경우는 別론으로 하더라도 目的, 構成, 作用效果의 전체적 대비에 의한 침해판단은 構成要件의 分說과 이에 대응하는 침해태양의 對比가 전제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대비하여 침해태양이 特許發明의 各 構成要件을 포섭하게 되면 침해태양은 保護範圍에 속한다고 판단된다. 다만, 特許請求範圍의 記載內容에 形式的으로 해당한다 하더라도 침해태양이 公知技術의 實施에 지나지 않는 경우, 또는 出願過程에서 出願人이 意識적으로 除外한 기술등의 실시인 경우 등에 있어서는 保護範圍에 속하지 않는다고 解釋해야 할 것은 전술한바 대로이다. 침해태양이 特許發明의 構成要件을 모두 充足하는 이상 침해태양에 附加的 構造나 工程이 存在한다하여도 이러한 附加部分은 보호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意味를 갖지 않는 것이고, 결국 침해태양은 抽象的 保護範圍에 속하는 것으로 評價된다. 이 附加部分에 의해 침해태양을 構成하는 技術思想이 特許登錄要件을 具備한 것으로 하여 特許權 實用新案權이 부여되고 있는 경우에도 같다(特許法 第45條

3項, 實用新案法 第11條 第3項) 同一發明에 대해 二重으로 特許權이 부여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後出願 特許權은 先出願 特許權에 對抗할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의장권과 利用抵觸關係에 대해서는 特許法 第46條 第3項 (實用新案法 第11條)와 의장법 第19條 第2項에 規定하는 바에 따르나 그 이외의 경우에는 物品에 대해 特許法이 保護하는 면과 의장법이 保護의 對象으로 하는 면이 다르기 때문에 先出願한 特許發明을 實施하는 경우에도 後出願한 의장권을 侵害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한편, 침해태양이 特許發明의 構成要件을 일부라도 缺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技術的 範圍에 속하지 않는다. 特許權者의 立場을 옹호하는 주장으로서 恠결한 要件이 特許發明의 要部와는 관계없는 無意味한 限定이고, 이를 缺하여도 要부를 구비한 이상 침해태양은 特許發明의 추상적 保護범위 (技術的範圍)에 속한다는 主張도 있다. 大法院의 判例도 要部가 同一하면 침해태양과 特許發明이 同一성이 認定되고 (1974. 11. 12. 74후 14, 1968. 9. 17 68후 17) 要部가 相異한 경우 침해태양은 技術的 範圍(추상적 保護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1970. 9. 22. 70후 27, 1973. 3. 7. 70후 25, 1973. 9. 12. 73후 33, 1973. 11. 30. 70 후 46, 1976. 12. 30. 76 후3) 고 하여 構成要件의 一部를 缺하여도 要부를 具備한 以上 침해태양은 特許發明의 技術的範圍에 속한다고 判決해 오고 있으며 最近의 判決에서도 “이 사건 심판대상인 원판시 (가)호 고안인 반환신호 회로는 피심판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제21159호 실용신안권의 고안의 기술적효과 발생에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피심판 청구인 등록고안의 요체를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구성부분으로서 그 등록고안의 나머지 부분은 위 반환신호회로의 보조적 역할을 하는데 불과하고, 위 (가)호 고안인 반환신호 회로부분이 없으면 위 등록 고안은 전혀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음이 명백한 바 사실관계가 위와같다면 이 사건 심판 대상인 원 판시 (가)호 고안이 심

판청구인의 등록고안인 제19042호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인의 이견 심판 청구는 실질에 있어서 피심판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제21159호 실용신안권의 고안이 심판청구인의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로 보아야 할 것이다”고 하여 構成要件을 一部 缺하고 있는 경우에도 要部가 同一한 경우에는 동일성이 認定된다는 종래의 判例를 다시 確認하고 있다. 그러나 特許請求範圍에 記載된 事項은 모두 發明의 構成에는 缺할수 없는 事項으로 出願인이 認識하여 그 裁量과 責任下에 記載한 것이고, 이러한 構成要件을 必須要件으로 하는 發明으로서 審査를 받아 特許가 賦與되고 있는 것이다. 技術的으로는 各 構成要件이 그 重要性에 있어서 差異가 있다 하겠으나 特許發明의 效力이 미치는 客觀的 範圍를 정하는 경우에 各 構成要件은 모두 必須的인 要件이고, 여기에 輕重의 差異를 두어서는 않될 것이다. 附加할 필요가 없는 無意味한 限定을 附加하여 權利를 얻은 경우에 그 附加에 의해 權利의 保護範圍가 縮小되는 不利益을 감수하여야 하는 것은 權利者이어야 하고 이것을 第3者에게 전가시켜서는 안된다. 構成要件의 一部를 缺하고 있는 不完全利用에 대해서도 各國의 學說判例는 一致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說明한 바와 같이 構成要件의 一部를 缺하고 있는 發明에 대해서는 特許廳의 審査가 행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特許權의 效力을 發生시키는 것은 實質的인 特許賦與行爲라 할수 있는 것으로서 出願公告決定謄本送達 後의 補正이 制限되고 特許請求範圍의 擴張은 訂正審判에 의해서도 認定되지 않는 것과 比較할 때 現行法의 解釋上 採擇하기 困難한 理論으로 생각된다. 要部の 比較에 의해 侵害를 認定할 必要가 있는 대개의 경우는 均等論을 適用함에 의해 同一한 解釋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各 構成要件의 比較에 의한 侵害 判斷方法이 實質에 있어서도 不當한 結果는 招來하지 않을 것이다. <계속>

韓國發明特許協會캠페인

질서는 나라자랑 친절은 나의자랑
이웃끼리 나눈온정 밝아오는 우리사회
정직앞에 불신없고 공정앞에 불평없다
에너지는 국력이다 아껴써서 애국하자

신 간 안 내

발명과 특허의 세계

특허변호사 David Pressman 저
특허청전기과장 정 양 섭 역저
4×6배판 · 590면 · 정가 15,000원

판매처 : 韓國發明特許協會 資料販賣센터